

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

순천 푸르지오 더퍼스트 모델하우스
홈페이지: <https://prugio-model.kr>
대표전화: ☎1688.3706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2.19.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88-3706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전라남도 순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9.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순천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2.19.(목)	2024.12.24.(화)	2024.12.26.(목)	2024.12.27.(금)	2025.01.03.(금)	2025.01.04.(토)~ 2025.01.08.(수)	2025.01.14.(화)~ 2025.01.16.(목)

1

공통 유의사항

[중요]

-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24년 11월말 기준 공정률 81.73%) 아파트로 2025년 07월 입주예정이오니, 청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비확장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 공급계약 체결시 선시공품목인 발코니 확장을 별도로 반드시 계약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순천푸르지오더퍼스트.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19.(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순천시 3개월 이상 거주자가(2024.09.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2.24.(화)	2024.12.26.(목)	2024.12.27.(금)	2025.01.03.(금)	2025.01.04.(토)~ 2025.01.08.(수)	2025.01.14.(화)~ 2025.01.16.(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 건본주택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새길 5)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순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순천시 건축과 - 52832호(2024.12.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14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29층 6개동 총 560세대

[특별공급 148세대(기관추천 21세대, 다자녀가구 56세대, 신혼부부 37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4000312	01	84.9645A	84A	84.9645	27.3715	112.3360	62.7805	175.1165	24.8637	128	12	12	23	3	11	61	67	5
		02	84.9570B	84B	84.9570	27.9615	112.9185	62.7749	175.6934	24.8615	26	3	3	4	1	2	13	13	1
		03	84.8720C	84C	84.8720	27.9192	112.7912	62.7121	175.5034	24.8366	28	3	3	5	1	2	14	14	1
		04	84.8932D	84D	84.8932	27.1696	112.0628	62.7278	174.7906	24.8428	28	3	3	5	1	3	15	13	1
		05	111.9235A	111A	111.9235	29.2388	141.1623	82.7005	223.8628	32.7528	234	-	23	-	7	-	30	204	10
		06	111.9619B	111B	111.9619	31.5290	143.4909	82.7289	226.2198	32.7641	96	-	10	-	2	-	12	84	4
		07	111.9595C	111C	111.9595	29.5594	141.5189	82.7271	224.2460	32.7634	20	-	2	-	1	-	3	17	1
		합 계									560	21	56	37	16	18	148	412	23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지하주차장등), 기계/전기실, 관리사무소, 돌봄센터등 부대복리 시설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기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9645A	84.9570B	84.8720C	84.8932D	111.9235A	111.9619B	111.9595C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11A	111B	111C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총분양가	1차	2차	1회(40%)	2회(20%)	
									계약시	계약 30일 이내	2025.03.20	2025.05.20	입주지정일
84A	128	101동 1호 105동 2,3호	2층	2	97,658,000	362,342,000	-	460,000,000	5,000,000	41,000,000	184,000,000	92,000,000	138,000,000
			3층	3	98,719,500	366,280,500	-	465,000,000	5,000,000	41,500,000	186,000,000	93,000,000	139,500,000
			4층	3	99,781,000	370,219,000	-	470,000,000	5,000,000	42,000,000	188,000,000	94,000,000	141,000,000
			5층	3	100,630,200	373,369,800	-	474,000,000	5,000,000	42,400,000	189,600,000	94,800,000	142,200,000
			6~15층	30	101,691,700	377,308,300	-	479,000,000	5,000,000	42,900,000	191,600,000	95,800,000	143,700,000
			16~20층	15	102,753,200	381,246,800	-	484,000,000	5,000,000	43,400,000	193,600,000	96,800,000	145,200,000
			21층 이상	20	103,814,700	385,185,300	-	489,000,000	5,000,000	43,900,000	195,600,000	97,800,000	146,700,000
		106동 1, 2호	2층	2	94,452,270	350,447,730	-	444,900,000	5,000,000	39,490,000	177,960,000	88,980,000	133,470,000
			3층	2	95,513,770	354,386,230	-	449,900,000	5,000,000	39,990,000	179,960,000	89,980,000	134,970,000
			4층	2	96,575,270	358,324,730	-	454,900,000	5,000,000	40,490,000	181,960,000	90,980,000	136,470,000
			5층	2	97,424,470	361,475,530	-	458,900,000	5,000,000	40,890,000	183,560,000	91,780,000	137,670,000
			6~15층	20	98,485,970	365,414,030	-	463,900,000	5,000,000	41,390,000	185,560,000	92,780,000	139,170,000
			16~20층	10	102,753,200	381,246,800	-	484,000,000	5,000,000	43,400,000	193,600,000	96,800,000	145,200,000
			21층 이상	14	103,814,700	385,185,300	-	489,000,000	5,000,000	43,900,000	195,600,000	97,800,000	146,700,000
84B	26	106동 3호	2층	1	93,390,770	346,509,230	-	439,900,000	5,000,000	38,990,000	175,960,000	87,980,000	131,970,000
			3층	1	94,452,270	350,447,730	-	444,900,000	5,000,000	39,490,000	177,960,000	88,980,000	133,470,000
			4층	1	95,513,770	354,386,230	-	449,900,000	5,000,000	39,990,000	179,960,000	89,980,000	134,970,000
			5층	1	96,575,270	358,324,730	-	454,900,000	5,000,000	40,490,000	181,960,000	90,980,000	136,470,000
			6~15층	10	97,636,770	362,263,230	-	459,900,000	5,000,000	40,990,000	183,960,000	91,980,000	137,970,000
			16~20층	5	100,842,500	374,157,500	-	475,000,000	5,000,000	42,500,000	190,000,000	95,000,000	142,500,000
			21층 이상	7	101,691,700	377,308,300	-	479,000,000	5,000,000	42,900,000	191,600,000	95,800,000	143,700,000
84C	28	105동 4호	2층	1	97,658,000	362,342,000	-	460,000,000	5,000,000	41,000,000	184,000,000	92,000,000	138,000,000
			3층	1	98,719,500	366,280,500	-	465,000,000	5,000,000	41,500,000	186,000,000	93,000,000	139,500,000
			4층	1	99,781,000	370,219,000	-	470,000,000	5,000,000	42,000,000	188,000,000	94,000,000	141,000,000
			5층	1	100,842,500	374,157,500	-	475,000,000	5,000,000	42,500,000	190,000,000	95,000,000	142,500,000
			6~15층	10	101,904,000	378,096,000	-	480,000,000	5,000,000	43,000,000	192,000,000	96,000,000	144,000,000
			16~20층	5	102,965,500	382,034,500	-	485,000,000	5,000,000	43,500,000	194,000,000	97,000,000	145,500,000
			21층 이상	9	104,027,000	385,973,000	-	490,000,000	5,000,000	44,000,000	196,000,000	98,000,000	147,000,000
84D	28	105동 1호	2층	1	95,322,700	353,677,300	-	449,000,000	5,000,000	39,900,000	179,600,000	89,800,000	134,700,000
			3층	1	96,384,200	357,615,800	-	454,000,000	5,000,000	40,400,000	181,600,000	90,800,000	136,200,000
			4층	1	97,445,700	361,554,300	-	459,000,000	5,000,000	40,900,000	183,600,000	91,800,000	137,700,000

			5층	1	98,507,200	365,492,800	-	464,000,000	5,000,000	41,400,000	185,600,000	92,800,000	139,200,000
			6~15층	10	99,356,400	368,643,600	-	468,000,000	5,000,000	41,800,000	187,200,000	93,600,000	140,400,000
			16~20층	5	100,417,900	372,582,100	-	473,000,000	5,000,000	42,300,000	189,200,000	94,600,000	141,900,000
			21층 이상	9	101,479,400	376,520,600	-	478,000,000	5,000,000	42,800,000	191,200,000	95,600,000	143,40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총분양가	1차	2차	1회(40%)	2회(20%)	
									계약시	계약 30일 이내	2025.03.20	2025.05.20	입주지정일
111A	234	101동 2호 102동1,3호 103동1,3,4호 104동1호 105동5호	2층	1	122,342,400	412,416,000	41,241,600	576,000,000	5,000,000	52,600,000	230,400,000	115,200,000	172,800,000
			3층	7	123,616,800	416,712,000	41,671,200	582,000,000	5,000,000	53,200,000	232,800,000	116,400,000	174,600,000
			4층	8	124,891,200	421,008,000	42,100,800	588,000,000	5,000,000	53,800,000	235,200,000	117,600,000	176,400,000
			5층	8	126,165,600	425,304,000	42,530,400	594,000,000	5,000,000	54,400,000	237,600,000	118,800,000	178,200,000
			6~15층	80	127,440,000	429,600,000	42,960,000	600,000,000	5,000,000	55,000,000	240,000,000	120,000,000	180,000,000
			16~20층	40	128,926,800	434,612,000	43,461,200	607,000,000	5,000,000	55,700,000	242,800,000	121,400,000	182,100,000
			21층 이상	50	130,201,200	438,908,000	43,890,800	613,000,000	5,000,000	56,300,000	245,200,000	122,600,000	183,900,000
		101동 4호	3층	1	120,006,000	404,540,000	40,454,000	565,000,000	5,000,000	51,500,000	226,000,000	113,000,000	169,500,000
			4층	1	121,280,400	408,836,000	40,883,600	571,000,000	5,000,000	52,100,000	228,400,000	114,200,000	171,300,000
			5층	1	122,554,800	413,132,000	41,313,200	577,000,000	5,000,000	52,700,000	230,800,000	115,400,000	173,100,000
			6~7층	2	123,829,200	417,428,000	41,742,800	583,000,000	5,000,000	53,300,000	233,200,000	116,600,000	174,900,000
			8~15층	8	127,440,000	429,600,000	42,960,000	600,000,000	5,000,000	55,000,000	240,000,000	120,000,000	180,000,000
			16~20층	5	128,926,800	434,612,000	43,461,200	607,000,000	5,000,000	55,700,000	242,800,000	121,400,000	182,100,000
			21층 이상	2	130,201,200	438,908,000	43,890,800	613,000,000	5,000,000	56,300,000	245,200,000	122,600,000	183,900,000
		104동 3호	3층	1	120,006,000	404,540,000	40,454,000	565,000,000	5,000,000	51,500,000	226,000,000	113,000,000	169,500,000
			4층	1	121,280,400	408,836,000	40,883,600	571,000,000	5,000,000	52,100,000	228,400,000	114,200,000	171,300,000
			5층	1	122,554,800	413,132,000	41,313,200	577,000,000	5,000,000	52,700,000	230,800,000	115,400,000	173,100,000
			6~15층	10	123,829,200	417,428,000	41,742,800	583,000,000	5,000,000	53,300,000	233,200,000	116,600,000	174,900,000
			16~20층	5	128,926,800	434,612,000	43,461,200	607,000,000	5,000,000	55,700,000	242,800,000	121,400,000	182,100,000
			21층 이상	2	130,201,200	438,908,000	43,890,800	613,000,000	5,000,000	56,300,000	245,200,000	122,600,000	183,900,000
111B	96	101동 3호	3층	1	117,882,000	397,380,000	39,738,000	555,000,000	5,000,000	50,500,000	222,000,000	111,000,000	166,500,000
			4층	1	119,368,800	402,392,000	40,239,200	562,000,000	5,000,000	51,200,000	224,800,000	112,400,000	168,600,000
			5층	1	120,643,200	406,688,000	40,668,800	568,000,000	5,000,000	51,800,000	227,200,000	113,600,000	170,400,000
			6~7층	2	121,917,600	410,984,000	41,098,400	574,000,000	5,000,000	52,400,000	229,600,000	114,800,000	172,200,000
			8~15층	8	125,740,800	423,872,000	42,387,200	592,000,000	5,000,000	54,200,000	236,800,000	118,400,000	177,600,000
			16~20층	5	127,015,200	428,168,000	42,816,800	598,000,000	5,000,000	54,800,000	239,200,000	119,600,000	179,400,000
			21층 이상	2	128,289,600	432,464,000	43,246,400	604,000,000	5,000,000	55,400,000	241,600,000	120,800,000	181,200,000
		102동 2호 103동2호 106동4호	2층	1	120,643,200	406,688,000	40,668,800	568,000,000	5,000,000	51,800,000	227,200,000	113,600,000	170,400,000
			3층	2	121,917,600	410,984,000	41,098,400	574,000,000	5,000,000	52,400,000	229,600,000	114,800,000	172,200,000
			4층	3	123,192,000	415,280,000	41,528,000	580,000,000	5,000,000	53,000,000	232,000,000	116,000,000	174,000,000
			5층	3	124,466,400	419,576,000	41,957,600	586,000,000	5,000,000	53,600,000	234,400,000	117,200,000	175,800,000
			6~15층	30	125,740,800	423,872,000	42,387,200	592,000,000	5,000,000	54,200,000	236,800,000	118,400,000	177,600,000
			16~20층	15	127,015,200	428,168,000	42,816,800	598,000,000	5,000,000	54,800,000	239,200,000	119,600,000	179,400,000
			21층 이상	22	128,289,600	432,464,000	43,246,400	604,000,000	5,000,000	55,400,000	241,600,000	120,800,000	181,200,000

111C	20	104동 2호	3층	1	119,793,600	403,824,000	40,382,400	564,000,000	5,000,000	51,400,000	225,600,000	112,800,000	169,200,000
			4층	1	121,068,000	408,120,000	40,812,000	570,000,000	5,000,000	52,000,000	228,000,000	114,000,000	171,000,000
			5층	1	122,342,400	412,416,000	41,241,600	576,000,000	5,000,000	52,600,000	230,400,000	115,200,000	172,800,000
			6~15층	10	123,616,800	416,712,000	41,671,200	582,000,000	5,000,000	53,200,000	232,800,000	116,400,000	174,600,000
			16~20층	5	128,714,400	433,896,000	43,389,600	606,000,000	5,000,000	55,600,000	242,400,000	121,200,000	181,800,000
			21층 이상	2	129,988,800	438,192,000	43,819,200	612,000,000	5,000,000	56,200,000	244,800,000	122,400,000	183,600,000

※ 분양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본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홈페이지(<https://순천푸르지오더퍼스트.com>)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과 근생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대지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세대별 대지지분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금액이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개정「주택법」제57조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사업 주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 금액의 상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 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10%) 중도금(1, 2회차 60%), 잔금(3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0조의2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포함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지자체에 인근 개발계획 문의 또는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주변 혐오·유해시설 유무,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철도, 도로, 차도, 하천, 녹지 등), 소음, 조망권, 일조, 진입로 등 주변환경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 관할기관 그리고 해당 사업관계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 제기 및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시설 및 공간의 명칭 및 동 번호 등은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는 시공사의 소유로서, 브랜드를 포함한 아파트의 명칭을 시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는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 단지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 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11A	111B	111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1	-	1	-	-	-	6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	-	-	-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	1	-	-	-	-	3
	장애인	2	1	-	1	-	-	-	4
		1	1	-	1	-	-	-	3
	중소기업 근로자	2	-	1	-	-	-	-	3
	소계	12	3	3	3	-	-	-	2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	3	3	3	23	10	2	56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4	5	5	-	-	-	3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1	1	1	7	2	1	16
생애최초 특별공급		11	2	2	3	-	-	-	18
합 계		61	13	14	15	30	12	3	14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body>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전남 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전라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제대군인	전남 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해당 요건을 갖춘 분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3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2">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2">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 / 84B / 84C / 84D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111A / 111B / 111C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1.03.(금) ~ 2025.01.12(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1.03.(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비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5.01.04.(토) ~ 2025.01.08.(수)	주택전시관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새길 5)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이전, 아래를 참고하시어 부적격 여부 및 해당 사항을 확인하신 후 본인의 당첨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동 · 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격검증서류는 본인의 당첨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점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간 내 해당 미비점을 보완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 3자 즉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청약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해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4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간,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19.)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이 변동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고지 예정으로 고지된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기간 내에 우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추첨)하되, 최초 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미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함)

※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 일(당첨일)이 공 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정당 당첨은 무효 처리됨. 또한,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 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자격검증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특별공급 · 일반공급 공통)

-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확한 청약 자격 검증을 위해, 발급받으시는 서류는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급 시 “전체포함” 또는 “상세”로 발급)
- 2005.07.01.「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전체포함”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 세대 구성사유,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 체 등 포 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성명, 주민번호 등을 모두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배우자 포함) 제 3자로 간주하며,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안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에 반드시 제출)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2024.12.19.)기준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2024.12.19.) 기준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각서		•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및 혼인여부 확인, “상세”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각서		•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2024.12.19.) 기준 설정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2024.12.19.) 기준 설정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 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 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각서		•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 주택전시관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주민센터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①,②주민센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③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농지대장 ②축산업 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주민센터 ②지자체 축산과 ③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해당직장
		필수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 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원본, 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세무서,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기 내용 참조
2023.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주택전시관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① 주택전시관 비치 ② 세무서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소득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세무서

입증서류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자격 확인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무주택서약서	청약자	• 건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건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2024.12.19.)기준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2024.12.19.) 기준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19.)기준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19.)기준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 주택전시관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증명원 등)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계약 체결 일정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1.04.(토) ~ 2025.01.08.(수)	2025.01.14.(화) ~ 2025.01.16.(목)	주택전시관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새길 5)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전북은행	1013-01-4039001	코리아신탁(주)
중도금/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잔금은 모계좌(전북은행, 1013-01-4039001, 예금주 : 코리아신탁(주))로 입금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접수 장소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접수 장소에 비치(6억 초과주택에 한함)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청약신청자)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대리 불가)
	○		위임장		• 주택전시관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인 해약조치 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정당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참고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여 당첨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 에게 공급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약식)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공급계약, 발코니확장 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 및 사업주체가 연대하여 균등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며 각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도급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발코니확장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증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발코니확장 계약서
납부기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중도금 용자알선은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한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 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가함.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 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와 시공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를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합니다. 이 때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순천시)은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 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 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공급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분양권 취소 등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선납할인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7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전 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 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기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9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	-------------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원, VAT포함, 인지세 별도)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11A	111B	111C
발코니 확장금액	33,000,000				44,000,000		

※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후분양 아파트**로서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사업주체에게 발코니 비확장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은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해진 기한내에 계약자 본인이 자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 하드웨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및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 대금 납부계좌**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전북은행	1013-01-4038890	코리아신탁(주)
중도금/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계약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일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계약금 계좌와 분양대금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욕실 및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FAN이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천정형 환기설비가 적용되며 세대 내 디퓨저 위치는 본 시공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사업부지외 부분은 해당 인허가 및 공사 진행 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의 홍보물, 판촉물, 모형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현저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북측 전라선 철도시설물이 위치하여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부지 경계 일부에 방음벽 시설 설치 예정으로 일부 동 저층세대 시각적 간섭, 방음벽 재질에 따른 빛반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철도시설물 보호를 위해 해당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시공하였습니다.
- 시행위탁자는 본 아파트 건립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순천중앙초등학교이며, 당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통학차량 임차비를 순천중앙초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금이 소진된 후에는 통학지원이 종료됩니다.
- 순천중앙초등학교 재학생은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 학교 학생 통학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이 아님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통학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통학차량 임차비가 소진된 후에는 통학지원이 종료됩니다.
- 본 아파트의 일부 동의 경우 SC물(메가박스 등)로 인해 조망 및 일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전류, 시스템 에어컨 등의 추가 선택 품목은 없으며, 별도의 가전 설치 시 해당 A/S 및 하자 요구는 해당 가전사 및 대리점에서 조치 되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일부동의 경우 배치형태에 따라 인접동 세대간의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계획서를 안내하며 입주 개시전 그 결과를 공고예정입니다.

■ 공용홀

- 일부 EV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나 천정형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 학생배치는 순천중앙초등학교이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기존 학교군에 분산 배치계획입니다.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대규모 물류 마비, 파업, 문화재 발굴 또는 “갑”(또는 “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비와 덕트가 노출시공 될 예정입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고,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우수입상관의 위치에 따라 발코니 출입문 개폐 시 일부 간섭이 생길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사용시 피난실 출입문 개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보일러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되거나 천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 설치로 인해 실외기실 및 발코니 최종마감 높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시설

- 지하, 지상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당 사업부지외 기반시설, 차도, 보도, 녹지 등은 실시계획인가, 인허가사항,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인근 통학차량 회차시 도로 폭, 인접 상가 차량 진출입로에 유의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A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 저해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핑 후 메인배수관에 연결됩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 비품 및 운영은 입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36개월)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내/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동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른 단지와 비교 등을 이유로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101동 102동 부대시설 옥상은 외부 사다리가 설치되어 관리 필요시 옥상으로 출입이 가능하며, 이 외의 부대시설 옥상으로 관리 목적으로 출입 시에는 이동식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진입하도록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인근에는 이를 위한 실외기 및 보일러 연도 설비 설치로 인한 소음, 악취 미관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에 인접하여 펌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설비환기구)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A(설비환기구)는 실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으며,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 일부 호실 천장 상부로 공용 덕트 및 배관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옥상 구조물은 시공 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홈페이지에 표현된 CG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홍보관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홈페이지,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 한 것이므로 계약 전 현장 홍보관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

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획 예정도는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홈페이지 및 인쇄물 등 각종 홍보물 상의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홈페이지,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도로, 완충 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홈페이지는 분양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주체(시행위탁사) 사정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거나 폐쇄될 예정입니다.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소음, 분진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및 조경 등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환기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및 수경시설을 포함한 외부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보관소,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보관소가 설치될 경우 폐기물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와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설치되며, 아파트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재활용보관시설, 재활용 창고, 수목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내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고층 세대는 옥상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의상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소음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환풍기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최상층은 승강기 기계실,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안테나 및 통신설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84㎡A, 111㎡A, 111㎡B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에 건립된 111㎡B 타입은 비 촉창세대로서, 101동 3호라인, 102동 2호라인, 103동 2호라인에 공급됩니다.
- 106동 4호라인 111B타입의 경우 침실3에 측면창이 설치되며, 불박이장은 침실2에 시공되오니, 청약 및 계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견본주택 내의 전시조명, 가구류(침대, 의자 등), 소품류(블라인드 등)은 모두 전시품목입니다.
- 본 공사 시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Wall-Pad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세대별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가 미포함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실외기실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철거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기된 사항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가스쿠팅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정 마감재 및 점검구 규격,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수건걸이,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모델하우스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 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은 온도차로 결로 현상 발생할 수 있음)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타입의 세대 보일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겨울철 보일러 및 급수, 배수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창호 및 루버 등 열린부위가 없도록 반드시 닫힘으로 관리하여 동파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 및 환기덕트는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다용도실 등 발코니에 환기시스템 (장비)이 설치될 수 있으며,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환기구 (급/배기)는 설계도면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환기시스템 (장비)이 설치되는 발코니(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등)의 천정에는 타입에 따라 특별한 천장 마감재 없이 노출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 (급/배기용)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되며, 형태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 (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홍보관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입주 후 추가에어컨 설치시 안방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실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사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감지기는 최하 2개층 및 최상층에 적용됩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으며 필로티 및 부대시설의 상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문은 열렸을 경우 하향식 피난구 작동과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일부 비내력벽 (침실,욕실,PD, 발코니 등의 부분)은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주방가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침실,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기준은 주택형별로 구성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전 타입 침실1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로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견본주택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의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자를 위한 냉난방 겸용 제품으로 전시품목이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블라인드, 가구류 등은 전시품목이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안방 파우더 룸에 콘센트 일체형 조명기구 적용시, 해당 조명기구는 일괄 소등이 적용되므로 일체형 콘센트도 일괄소등시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세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천정형 냉매배관 및 드레인배관이 전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입주 이후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배관용이며, 삼성 장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사 제품 사용시 배관규격이 상이하여 별도 재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쿱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

(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택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종 홈트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과 연계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은(주거서비스) 당사와의 계약기간 혹은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공용부)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경계에 투시형 펜스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고,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구간, 재질, 규격,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주택 인/허가, 경관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면은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주택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03동 인근 단지 북측에 방음벽이 시공될 예정으로 저층부 시야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CG, 모형 등) 에 표현된 옹벽, 난간, 방음벽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재질, 높이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 문주, 경비실, D/A(설비환기구), 외부 엘리베이터/계단실 등 외부시설물의 형태, 디자인, 마감재 등은 기능 및 외관 개선을 위해 인허가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미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와 연결되는 계단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상층 출입구는 출입구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측벽 포함)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발전설비,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방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에 노출되는 설비배관이 있을시 미관상 별도 지정마감을 통해 노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배관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이나 진동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모형을 통해 해당 위치를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 및 산책로 주변 세대는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경관조명, 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포장시설, 운동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통신시설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등으로 조경 및 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거 단지 내 소방관련 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홍보관 및 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이 설치 될 경우에 수질정화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나, 이는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수질은 담수기간, 이용횟수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이 설치 될 경우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홈페이지에 표현된 CG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결

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홍보관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홈페이지,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철도, 보도, 도로, 하천,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단지 내부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물의 디자인은 각종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 및 시설물, 포장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 종류,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 수목 및 시설물의 위치, 포장 범위,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면과 단지모형에 표기된 구간의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 및 웬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배수층 또는 배수판을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또는 실외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놀이/휴게/운동시설물 등이 설치될 경우, 시설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이 있는 주/부출입구 외에 외부에서 진입 가능한 출입구가 다수 있으며,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주, 배기탑 등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주택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 및 조경식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간판을 가릴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 차에 따른 보행편의성을 위해 계획된 서틀용 승강기 인접세대에서는 승강기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승강기 기계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CG에 표현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 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나,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천장 내 기계설비 배관 및 덕트, 소방 및 전기 트레이 등으로 유효 천장고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주요 방법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고해상도 CCTV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 구성에 따라 장비의 사양이 건축허가 시 제출되었던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 일부에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입주민께서는 모형과 카다로그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엘리베이터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설비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주출입구, 부출입구의 차단기 위치는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 장비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위치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위치는 공용홀로부터의 접근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설비의 이동은 불가합니다.
- 공용부에 설치되는 세대 창고의 접근거리는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위치와 계획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에 맞게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기기의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요금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구 분		설치 위치
옥외안테나	옥상층	101동, 104동
	옥상층	101동, 104동
	지하1층	103동 제연환룸, 105동 제연환룸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102동, 103동, 105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층효로 방면 단지 경계부에 순천시 상수도가 일부 침범하여 매설되어 있으며, 순천시가 준공 전까지 상수도관 미 이설 시,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 협의회 측에서 협의 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건축	전기	소방/통신
회사명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주)성우엔지니어링	(주)티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2,605,325,800	616,116,546	46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단열조치 준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설계용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급수펌프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조명설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친환경 관련 인증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등급)
0.218g	VII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24-101-0007700	216,647,06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 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주식회사 순천디앤씨와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 및 시공사 (주)대우건설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본 조의 특약사항은 분양계약의 다른 일반조항 및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보다 우선하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순천디앤씨와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순천디앤씨임을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2.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시행위탁자주식회사 순천디앤씨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시행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순천디앤씨가 부담한다.
- 3.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순천디앤씨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4.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순천디앤씨 또는 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6.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7.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순천디앤씨 또는 매수인 “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8.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순천디앤씨와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9.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순천디앤씨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10층)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전라남도 순천시 남신월1길 3, 2층 203호(조례동)
법인등록번호	110111 - 2937831	110111 - 2137895	284411 - 0108637

■ 순천 푸르지오 더퍼스트 견본주택 :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새길 5 (순천 푸르지오 더퍼스트 주택전시관= 순천푸르지오 더퍼스트 모델하우스)

■ 사업지 :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142번지 일원

■ 홈페이지 : <https://prugio-model.kr> ■ 대표번호: 1688-3706

■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 약도



현장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142번지 일원
견본주택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새길 5

■ 분양문의 : 1688-3706

-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